

# <별첨2>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안

## I. 행정지도의 취지

-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융업권은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(이하 '자체점검')을 추진 중
  - ⇒ 자체점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점검 체계·범위·방식 등을 지도

## II. 행정지도의 내용

### □ 점검체계

- (점검주체) 사모펀드\* 판매사, 운용사, 신탁사\*\*, 사무관리회사
  - \*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'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'
  - \*\*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(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PBS)
- (점검 협의체) 주요 판매사·운용사·신탁사·사무관리회사 임원급\*으로 점검 협의체\*\*를 구성하여, 점검관련 세부사항 결정, 점검과정에서의 이견사항 조정 등 역할 수행
  - \* 협의체 구성원은 금감원과 판매사·운용사·신탁사·사무관리회사가 협의하여 결정
  - \*\*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협의체 간사역할 수행

### □ 점검범위

- (점검대상) '20.5.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\* 사모펀드
  - \* 점검일 현재 환매·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청산된 펀드, 최근 검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펀드 등은 점검 제외
- (점검내용) 사무관리회사와 신탁사의 자산명세 일치여부, 자산실재여부, 투자설명자료와 운용방법의 일치여부,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 등

- 판매사 등의 점검이 곤란한 자산 가치평가 관련 사항 등\*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
  - \* 자산 회수 가능성, 자산평가의 적정성, 계약서 진위여부 등
- 해외자산, SPC를 통한 복잡한 구조의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점검 내용·방식을 정할 수 있음

## □ 점검방식

- **(자산명세 점검)** 사무관리회사(운용사\*)와 신탁사는 ①사무관리회사(운용사\*)의 자산명세와 ②신탁사의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
  - \* 운용사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펀드는 운용사
- **(자산실재 점검)** 신탁사는 펀드 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하고, 판매사\*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 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운용사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\*\*
  - \* 1개 펀드가 여러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점검기준일 기준 판매 금액이 가장 큰 판매사(단,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타판매사가 점검 가능)
  - \* 예탁자산 등 금융기관 발행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신탁사가 확인실시
- **(펀드 운용방식 점검)** 판매사는 펀드별로 ①실제 운용내역이 ②투자설명자료\*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②투자설명자료와 ③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을 점검
  - \*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판매사의 판매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설명자료(투자제안서 등 명칭 불문)를 의미하며, 운용사 제공 설명자료를 투자자 이해가 용이하도록 판매사가 수정하여 투자자에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

## □ 금감원에 대한 보고

- **(수시보고)**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특이사항 발견시 검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보고
- **(중간보고)** 점검진행 경과 등에 대해 금감원이 요청한 경우, 금감원에 보고
- **(종합보고)** 점검완료 후 협의체는 4개 점검주체의 공동 확인을 거쳐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

점검주체의 준수사항

- (상호협조) 판매사·운용사·신탁사·사무관리회사는 원활한 점검을 위해 상호간 자료제공 등에 적극협조하고, 협의체 결정을 준수
- (비밀유지) 판매사·운용사·신탁사·사무관리회사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

※ 행정지도상 규정하지 않은 점검 관련 세부사항은 협의체에서 결정

### **Ⅲ. 행정지도의 시행일 및 존속기한**

(시행일) 공고한 날부터 시행

(존속기간) 공고한 날부터 1년간 유효